

보험금 수령 포기과 사망보험금 수령자격 - 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 병 규*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독일의 논의 |
| II. 대상판결 - 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V. 비교분석과 제도운용방안 |
| III.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과 논점 | VI. 맺음말 |

주제어 :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 타인을 위한 보험, 단체보험, 타인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동의, 상속 포기, 보험금 수령 포기

<국문초록> 생명보험은 특히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보장이나 위험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수익자 지정 및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있어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여 보면,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어서 수령을 요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어서 보험자의 수령이 없어도 지정·변경은 유효하나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우리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독일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특히 독일에서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계약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계약자, 보험자, 제3자에 있어서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은 증빙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상속비율에 의하여 보험금 분배가 결정된다는 점은 한국과 독일이 같다. 다만 독일은 그 점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해석에 의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이해하는 점도 한국과 독일이 같다. 문제의 사건에서, 대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Jur.)
- 논문접수일(2020.09.27), 심사개시일(2020.10.14), 게재확정일(2020.10.29)

원은 종전의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을 포기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35조의3에 제3항을 추가하게 된 취지는 단체 근무 종업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유족의 회생하여 단체나 회사 사장이 보험금을 취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수익자를 당해 회사로 약정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수령권자로 된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고 본 점은 타당하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포기 각서 등의 인정은 특히 회사의 회유 등에 의한 경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의 처(妻)와 모(母)가 서명한 ‘법정상속인 확인서’도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계약의 정당한 수익자가 마치 동 회사인 것처럼 수여 받아낸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보험자의 모(母)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한 것의 진정성 및 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보험자의 모의 의사가 단순한 상속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의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는 분명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밝히도록 지시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타인의 사망보험, 단체보험의 법리, 수익자 지정·변경의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확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법리에 대한 사례화, 유형화를 통하여 더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I. 머리말

민영보험제도는 국민들을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이 있다. 그 가운데 생명보험은 특히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상

실된 소득을 보상에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보장이나 위험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¹⁾ 특히 개인사망보험이 성장률이 높다.²⁾ 생명보험은 사고에 대한 공평한 위험부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작성한 생명표³⁾와 사망률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⁴⁾ 경제생활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에 의존해 있고 재산의 형성 정도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크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매우 중요한 법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보험수익자 지정을 둘러싸고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타인의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는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필요하다. 그리고 단체보험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도 법리가 문제가 된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포기도 또한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특히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도 같이 고찰한다.

II. 대상판결 - 대법원 2020.2.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1. 사안

선박도장업을 하는 A사 직원 차이모씨는 2015년 8월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안모씨에 의해 살해 당하였다. 앞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A사는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2억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부인 왕씨는 단체계약에서 단체보험 수익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차이씨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차이씨의 어머니

1)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815쪽.

2)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211쪽.

3) 천문학자인 Halley가 1693년에 생명보험의 기초인 생명표를 제작·사영하였으며, 18세기 초에 이르러 근대적인 생명보험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맵, 2017, 8쪽.

4)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244쪽.

최모씨는 보험금 수령을 포기했으므로 본인과 자녀가 보험금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왕씨와 최씨가 서명한 '법정상속인 확인서'도 A사가 보험계약의 정당한 수익자가 마치 A사인 것처럼 속여 받아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A사는 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험수익자를 A사로 적법하게 지정했으며, 설령 아니더라도 왕씨 등이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통해 A사의 보험금 수령을 동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2. 소송의 경과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6.7.22.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은 보험계약 당시 수익자를 A사로 약정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단체계약에 보험수익자를 A사로 지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중국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왕씨와 자녀에게 각각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A사와 근로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정상속인 확인서 역시 A사와 보험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왕씨와 최씨가 착오로 보험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무효라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포기하기로 한 최씨에게는 보험금을 상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제2심(부산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나54926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보고 보험사가 왕씨와 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하였다. 다만 법정상속인 확인서는 A사가 왕씨 등을 속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3. 대상판결

대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포기한 지

분의 권리가 나머지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명인 어머니 최씨가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왕씨 등에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왕씨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최씨의 성명서를 근거로 최씨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최씨가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원심에서 성명서 제출 경위, 최씨의 진정한 의사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된 피보험자의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이상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였다.

4. 판결의 쟁점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권리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문제된다. ② 보험계약 당시 수익자를 당해 회사로 약정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③ 상속인 중의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바, 그러한 의사표시가 분명히 존재하는가도 쟁점이다. 만일 상속인 중의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도 판단을 요한다.

III.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지정과 논점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된 점은 단체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의 지정,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효력이다. 아래에서는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문제와 이 논점을 짚어본다.

1.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생명보험은 통상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 많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사정 여하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제733조 제1항), 이것을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라 한다. 상법은 생명보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의 원칙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⁵⁾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지정변경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3조 제2항).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733조 제3항).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4항). 가령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딸이 보험계약자인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기사고로 동시에 사망하면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⁶⁾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은 사망보험이나 혼합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체결된 경우에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⁷⁾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형성권이

5)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415쪽.

6)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350쪽.

7)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684쪽.

며 단독행위이다.⁸⁾⁹⁾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피지정자 및 기존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¹⁰⁾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항요건](제734조 제1항). 그러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타인의 사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시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가 있어야 한다(제734조 제2항).

2. 복수의 수익자의 경우 법적 처리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 2 제2항). 이 규정은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상법 개정시에 추가가 된 것이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다수 있는 경우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책임이 없는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하여 선의의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복수인이고 그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보험자는 전부 면책이 된다고 해석된다.¹¹⁾

3. 단체보험에서의 수익자지정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8)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전한덕,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335쪽 아래, 최병규,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133쪽 아래 참조.

9)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523쪽.

10)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611쪽.

11)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878쪽.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참조.

생명을 고의로 위협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¹²⁾ 형사정책적 목적의 규정이 필요하다.¹³⁾ 이에 둔 규정이 상법 제731조이다. 즉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은 일정한 규약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되므로 도박이나 투기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¹⁴⁾ 즉 단체는 구성원의 생사에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경우 일부러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도덕적 헤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¹⁵⁾ 단체가 이러한 규약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¹⁶⁾ 여기에서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¹⁷⁾ 이와 같이 단체보험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2항). 그리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이 제3항의 규정은 2014년 상법 개정시에 추가되었다. 이 규정을 통하여 단체보험의 구성원과 유족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⁸⁾ 이는 가급적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¹⁹⁾

12)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451쪽.

13)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611쪽.

14) 유주선, 「보험법」,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8, 415쪽.

15)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332쪽.

16)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782쪽.

17) 장덕조, 「보험법」 제5판, 법문사, 2020, 483쪽.

18)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438쪽.

19) 이준교·정찬목, 「관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370쪽.

4.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원시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을 통해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다.²⁰⁾ 우리 대법원도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²¹⁾

IV. 독일의 논의

독일에서는 2007년 보험계약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동법 제160조²²⁾에서 수인의 보험수익자 지정의 경우 해석에 대하여 규정을 한다.

20)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772쪽.

2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명수, 「보험판례개관」, 법문사, 2013, 539쪽.

22)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보험수익자 지정의 해석) (1) 다수의 자가 그 지분을 정함이 없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이들은 균등하게 수익권을 가진다. 어느 수익자가 취득하지 않은 지분은 나머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2) 보험자의 급부가 보험계약자의 사망후에 행하여질 것이고 또 상세한 정함없이 상속인에 대한 지급이 약정된 경우, 의심이 있을 때에는 사망시에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의 포기는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권리가 수익자인 제3자에 의하여 취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한다.(4) 국고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때에는 국고는 제2항 제1문의 의미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1. 독일의 법제와 논의

(1) 총설

보험수익자 지정은 일방적인, 수령을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서²³⁾ 해석(독일 민법 제133조²⁴⁾ 157조²⁵⁾)을 허용한다.²⁶⁾ 특히 수익자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표현한 의사이다.²⁷⁾ 따라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의 해석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또는 주위사정으로부터 다른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²⁸⁾

(2) 2007년 개정

2008년 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은 근 100년만인 2007년 크게 개정되었다.²⁹⁾ 구법 제167조 이하의 규정은 개정의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순화하였고 그 밖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종래 저축성보험으로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제160조 제3항은 구법 제16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 다수의 수익자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 제1문은 아수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다수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서 그 지분에 대하여 다른 내용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수익권을 갖는다. 이는 면제적 생명보험(befreiende Lebensversicherung)에서도 적용된다.³⁰⁾ 보험금은 개별채권자로서

23) BGH, VersR 1988, S. 1236. 독일에서 수령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는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은 계약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계약자, 보험자, 제3자에게 있어서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은 증빙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24) 독일 민법 제133조(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사가 탐구되어야 하며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에 구애되어서는 아니된다.

25) 독일 민법 제157조(계약의 해석) 계약은 신의성실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26) BGH, VersR 1987, S. 659.

27) BGH, VersR 2015, S. 1148.

28) Bruck/Möll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8/1, 9. Aufl., Berlin, 2013, S. 475.

29) 이에 대하여는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05쪽 참조

수익자의 머리수에 따라 분배된다.³¹⁾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의 해석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복수의 수익자가 같은 순위로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이다. 단계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고려되는 복수인 가운데 누가 수익자로 지정될 것인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³²⁾

(4) 수익자로서의 상속인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시점의 상속인으로 되는 사람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³³⁾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상속재산 아님

상속인への 지급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서 보험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직접 행하여 진다.³⁴⁾ 따라서 그 한도에서 유언집행자의 행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의 포기는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 제2문). 이는 상속포기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 그러하다. 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자신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 제2문은 보험금청구권이 상속(Erbgang)에 의해 취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유산(Nachlass)에 속하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³⁵⁾

2) 모든 상속인이 수익자

보험금수령자격이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존재하는 모든 상속인이자

30) Hülsmann, VersR 1993, S. 1188. 법률상의 연근보험에서 가정적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Gutdeutsch, VersR 1992, S. 1444 참조

31) BGHZ 13, S. 226.

32)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I, München, 2010, § 160, Rdn. 6.

33)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30. Aufl., München, 2018, S. 920.

34) LG Karlsruhe, VersR 1956, S. 313.

35) BGHZ 32, S. 44, LG Hamburg, VersR 1957, S. 677.

만,³⁶⁾ 국고(Fiskus)는 아니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4항). 국고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고도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으로 보험금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³⁷⁾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결과 모든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으로 지정시의 현존하는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내용의 지정은 보험계약자가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상속효과는 유언적으로 결정된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선상속인, 후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상속인만 수익자가 된다.³⁸⁾ 피상속인의 의사를 해석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없는 것이 되고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유산)이 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3항).³⁹⁾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분에 비례하여 인정된 상속인은 개별채권자로서 인정되지 연대채권자 아니다.⁴⁰⁾ 이 때 독일 민법 제1371조 제2항 및 제2102조, 제2139조를 주의하여야 한다.⁴¹⁾

3) 다른 정함이 우선함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다른 정함이 없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⁴²⁾ 그 경우에만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한 법적 효과와 법률상의 추정을 정당화한다. 동 규정은 상속효과와 보험금에 대한 상응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같은 순위에 놓고 있다. 그에 반하여 유족(Hinterbliebene)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정함을 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⁴³⁾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도 해당하는 특정

36) LG Karlsruhe, VersR 1956, S. 313.

37)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 160, Rdn. 10.

38) OLG Schleswig, ZEV 1996, S. 84.

39) Honsel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99, § 167, Rdn. 6.

40) BGHZ 13, S. 226.

41) LG Hagen, VA 1947, S. 24.

42) OLG Frankfurt am Main, VersR 1996, S. 358.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 160, Rdn. 3.

43) OLG Frankfurt am Main, VersR 1996, S. 358.

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역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⁴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보험금에 대한 비율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즉 다수의 자가 그 지분을 정함이 없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이들은 균등하게 수익권을 가지는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4) 대가관계

수익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구별하여야 하는 문제와 또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 제3자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의 관계에서 보험급부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여도 되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최근에 이혼한 사람을 수익자로 한 경우 상황의 기초가 사라짐으로써 사정변경으로 대가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여야만 하는 것은 하는지 하는 물음이다. 부부공동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정변경을 원용하는 자가 진다.⁴⁵⁾ 이 법리는 이제는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같이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⁴⁶⁾ 철회할 수 있는 수익자 지정의 경우, 이혼이후에도 보험계약자가 오랫동안 수익자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⁴⁷⁾ 이혼에 의한 사정변경원칙 주장은 생명보험이 오로지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의 보장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⁴⁸⁾

(5) 수익자의 권리 비취득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비취득의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 제2문과 제3항의 해석규정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비취득의 사례

수익자가 일방적인, 법률형성적인 것으로서 자신으로의 수익자지정의 의사표시

44) HK-VVG, § 160, Rdn. 2.

45) BGHZ 128, S. 125.

46) BGH, VersR 2013, S. 302.

47) OLH Hamm, VersR 2002, S. 1409.

48) OLG Köln, FamRZ 1998, S. 193.

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333조⁴⁹⁾에 의하여 수익권은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철회할 수 없는 수익자지정에서의 수익자는, 그를 수익자로 함이 보험자에 대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사고 전에도 할 수 있고 사고 후에도 할 수 있다.⁵⁰⁾ 그에 반하여 철회할 수 있는 수익자지정의 경우에는 그는 보험사고후 및 그와 결부된 권리취득 이후에 그를 거부할 수 있다.⁵¹⁾ 독일 민법 제333조에 의한 포기가 있느냐는 경우에 따라서 해석에 의하여(독일 민법 제133조, 제157조)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수익자가 동기를 표명하면서 보험계약자의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자신은 포기하는 것(그 결과로는 그 자의 청구권은 소급적으로 유산에 속하게 된다)으로 이해하거나 독일 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권 양도의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⁵²⁾ 보험자에게 한, 상속인에게의 보험금지급의 지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법상의 이유로 독일 민법 제333조의 포기로 해석하여야 한다.⁵³⁾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제3자 수익자 지정 시에 전제된 상황이 그 의사표시 이후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독일 민법 제313조⁵⁴⁾, 행위기초의 교란). 또한 수익자 지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지정된 수익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⁵⁵⁾

49) 독일 민법 제333조제3자에 의한 권리의 거절,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낙약자에 대하여 거절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취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0) RGZ 119, S. 1.

51) RGZ 101, S. 306.

52) 이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BFHE 159, S. 546 참조

53) FG Niedersachsen, EFG 2000, S. 387.

54) 독일 민법 제313조(행위기초의 교란) 1)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현저히 변경되고, 그 변경이 만일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경우에,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사정, 특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위험 분배를 고려하면 당사자 일방에게 원래의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변을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의 기초가 된 본질적인 관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사정의 변경과 동시된다. 3) 계약의 변을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다.

55) BGH, VersR 1962, S. 405.

2) 비취득의 효과

수익자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 이상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내지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3항).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지정을 여러번 변경하였고 시간적으로 맨 나중의 지정이 무효이면 독일 민법 제139조⁵⁶⁾에 의하여 그와 동시에 이전 지정도 철회된 것이고 그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누구에게 권리를 줄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한다.⁵⁷⁾ 이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3항은,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지정이 무효인 경우라도 이전의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주려는 것이 아님이 해석상 분명할 때에만 적용한다.

수익자가 사망하면 철회할 수 없는 지정의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59조⁵⁸⁾ 제3항에 따라 수익자지정으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다른 의사를 표명하였거나 다른 의사를 주변사정상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령 해제조건부 식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⁵⁹⁾ 보험계약자 자신도 수익자 지정 이후에 상속의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수익자가 될 수 있다.⁶⁰⁾

3) 다수의 수익자

여러 명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 제2문) 동조 제3항의 원칙에서 벗어나 수익자에 의해 취득되지 않은 부분만큼 나머지 수익자의 몫이 증가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그들의 각각의 몫에 비례하여 보험금청구금액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는, 수익권에 대한 해석으로 보험계약자의 다른 의사가 없을 때에 그러하다. 수인간의 몫은 보험계약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

56) 민법 제139조 (부분적인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라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그것이 수행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는, 전체법률행위도 무효이다.

57) BGH, VersR 1981, S. 371.

58) 독일 보험계약법 제159조(보험수익자 지정) (1)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수익자를 그 밖의 타인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다. (2) 지정변경권이 유보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는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고 발생으로 비로소 취득한다. (3) 지정변경권이 유보되지 않은 보험수익자 지정시 보험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정과 동시에 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59) RG SeuffArch 48 Nr. 128, AG Möllen, VersR 1978, S. 131.

60) RFHR, StBl. 1933, S. 1090.

하여 질 수도 있고 의문이 있는 경우의 해석규정인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주어질 수도 있다.⁶¹⁾ 여러 수익자가 특정한 금액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수익자의 몫이 금액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그 때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몫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나머지 자의 몫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는 그로써 확정된 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지(그 때에는 취득하지 못한 자의 몫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내지는 그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를 해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⁶²⁾

(6) 보험금의 공탁

수익자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의문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372조 이하). 의문이 있는 경우의 근거로서 단순히 다수의 청구권 요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객관적인,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⁶³⁾ 독일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전문가조직이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사항적 상황과 법적 상황을 판단하여 보고 그래도 누가 진정한 수익자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이 가능하다.⁶⁴⁾

2. 독일 법제의 평가

독일에서도 상속인의 지급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서 보험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직접 행하여지며, 그 한도에서 유언집행자의 행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상속포기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 그러하다. 즉 보험금청구권은 자신의 고유의 권리로써 취득되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해석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없는 것이 되고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분에 비례하

61) OLG Saarbrücken, VersR 2007, S. 1638.

62) Frels, VersR 1968, S. 524, Kuhn/Rohlfing, ErbR 2006, S. 11.

63) BGHZ 7, S. 307.

64) OLG Frankfurt am Main, VersR 2005, S. 1067.

여 인정된 상속인은 개별채권자로서 인정되지 연대채권자가 아니다. 실제로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은 보험자의 급부가 보험계약자의 사망후에 행하여질 것이고 또 상세한 정함없이 상속인에 대한 지급이 약정된 경우, 사망시에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좁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다른 정함이 없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경우에만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의거한 법적 효과와 법률상의 추정을 정당화한다. 동 규정은 상속효과와 보험금에 대한 상응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같은 순위에 놓고 있다. 그에 반하여 상속인이 아니라 유족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정함을 한 것이 된다. 그리고 독일에서 사정변경에 의해 수익자 지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이혼한 사람을 수익자로 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대가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여야만 하는 것은 하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사정변경을 주장하기 위해 부부공동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정변경을 원용하는 자가 진다. 이 법리는 독일에서는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같이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수익자 지정의 경우, 이혼이후에도 보험계약자가 오랫동안 수익자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에 의한 사정변경원칙 주장은 생명보험이 오로지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의 보장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 기초사실의 변화에 의한 사정변경에 의해 기존 수익자지정을 인정하지 않음은 주목을 요한다.

수익자지정은 해당 수익자가 거부할 수 있다. 자신으로의 수익자지정의 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수익권은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철회할 수 없는 수익자지정에서의 수익자는, 그를 수익자로 함이 보험자에 대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사고 전에도 할 수 있고 사고 후에도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철회할 수 있는 수익자지정의 경우에는 그는 보험사고후 및 그와 결부된 권리취득 이후에 그를 거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 수익자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내지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지정을 여러번 변경하였고 시간적으로 맨 나중의 지정이 무효이면 독일 민법상 일부무

효시 전부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그와 동시에 이전 지정도 철회된 것이고 그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누구에게 권리를 줄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V. 비교분석과 제도운용방안

1. 우리나라의 독일의 법제 비교

보험수익자지정 및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의 법리에 있어서 독일의 법제와 우리의 법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선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어서 수령을 요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어서 보험자의 수령이 없어도 지정·변경은 유효하나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우리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고, 독일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특히 독일에서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계약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계약자, 보험자, 제3자에 있어서 권리를 변경하는 내용은 증빙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를 A로 하였다가 B로 변경하였는데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의 경우 B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A가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런데 보험금청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보험자에게 증거가 남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이론처럼 우리의 경우도 수익자변경의 의사표시는 보험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을 갖는 방향으로 입법론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상속비율에 의하여 보험금 분배가 결정된다는 점은 한국과 독일이 같다. 다만 독일은 상속비율에 의하여 보험금 분배가 된다는 점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는 해석에 의하여 그와 같이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국고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보험계약법 제160조 제4항). 보험금청구

권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이해하는 점도 한국과 독일이 같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의 사실 확인이 문제가 되어 독일의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우리의 경우처럼 피보험자의 유족 측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2.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⁶⁵⁾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을 포기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35조의3에 제3항을 추가하게 된 취지는 단체 근무 종업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유족의 희생하여 단체나 회사 사장이 보험금을 취득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사안에서 계약 당시 수익자를 당해 회사로 약정했지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맺은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수령권자로 된다(상법 제735조의3 제3항)고 본 점은 타당하다. 다만 보험금청구권 포기 각서 등의 인정은 특히 회사의 회유 등에 의한 경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의 처(妻)와 모(母)가 서명한 '법정상속인 확인서'도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계약의 정당한 수익자가 마치 동 회사인 것처럼 속여 받아낸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보험자의 모(母)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한 것의 진정성 및 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

65)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보험자의 모(母)의 의사가 단순한 상속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보험금청구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이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의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보험금청구권의 포기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는 분명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밝히도록 지시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VI. 맺음말

생명보험은 가족부양 등 생산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줌으로써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 731조). 그런데 단체보험의 경우는 일일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단체 규약에 규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었다. 하지만 피보험자 사망을 통하여 회사 등이 투기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단체규약에 명확하게 피보험자 측이 아닌 자에게 보험금수령권을 준다는 점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후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보험금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지의 문제점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강요나 협박 또는 착오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이다.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타인의 사망보험, 단체보험의 법리, 수익

자 지정·변경의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험수익자 지정에 있어,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익자 지정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는 점, 단체보험에 대한 수익자 지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일 법제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익자지정이 일방적 행위로서 단독행위로 본다는 점 및 상속포기가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독일법제와 우리법제가 동일하다.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확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법리에 대한 사례화, 유형화를 통하여 더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명수, 「보험판례개관」, 법문사, 2013
- 김선정, “보험사고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자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생명보험」 2017년 9월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 송옥렬, 「상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16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유주선, 「보험법」,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8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마인드맵, 2017
-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전한덕,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2020
-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 장덕조, 「보험법」 제5판, 법문사, 2020
- 채이식, 「상법강의(하)」 개정판, 박영사, 2003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 최병규,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2020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Bruck/Möll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8/1, 9. Aufl., Berlin, 2013

Honsel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9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I, München, 2010

Looschelders/Pohlman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Köln, 2010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30. Aufl., München, 2018

Römer/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4. Aufl., München,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abandonment of receipt of
insurance money and the qualification of death
benefit receipt
- focused on the critical notes about the supreme court case
2017DA215728 -**

Choi, Byeong Gyu*

Life insuran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especially for the security of the survivors. Life insurance does not restore lost lives, but instead compensates for lost income, so the dependent family can live economically. In Korea, life insurance is relatively developing rather than non-life insurance due to high awareness of retirement security or risk prevention. When comparing Germany and Korea in the case of designation of insurance beneficiary and the case of an insurance beneficiary, whether the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insurance beneficiary is a single act with the other party, so it is necessary to receive it, or is it a single act without the other party, so designation even without the receipt of the insur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ether the change is valid or not. In other words, in our case, it is regarded as a single act without a partner, and in Germany, it is seen as a single act with a partner.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such a view in Germany is that the content that does not require receipt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contract law, and that the content of the change of rights in policyholders, insurers and third parties requires a means of proof. In the case of designating an inheritor as an insurance beneficiary, the distribution of insurance benefits is determined by the inheritance ratio at the time of death of the insured in Korea and Germany. However, in Germany, this is explicitly stipulated in Article 160 (2) of the German

* Professor, Konkuk University Law School, Dr.Jur.

Insurance Contract Law,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we are treated as such by interpretation. In Korea and Germany,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is understood as the inherent right of the beneficiary who is the heir rather than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heir. In the case in question, in the case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or accident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the policyholder with the insured's heir as the beneficiary, as in the previous case,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 can claim insurance payments, and this right naturally arises from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t is considered the inheritor's own property, not the inherited property. In this rega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was not affected even if the inheritance was abandoned. The purpose of adding Paragraph 3 to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Act in relation to group insurance in 2014 is to prevent group or company presidents from acquiring insurance money at the expense of the insured's survivors in case of death of a group employee. will be. Therefore, if the beneficiary was contracted as the company at the time, but the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did not explicitly stipulate that the beneficiary shall be the company and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was not obtained, the insured's heir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mmercial Law Article 735-3 (3) is valid. However, the recognition of the memorandum of expansion of insurance claim rights, etc.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company's reason. In the case, the 'legal heir confirmation' signed by the insured's wife and mother was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if the company, which is the policyholder, was deceived as if the legitimat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contract was the company. In addition, it was deemed necessary to confirm the truthfulness of the insured's mother's waiver of all inheritance rights (shar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and his intention to renounce insurance claims. Whether the insured's mock intention is to simply give up the inheritance or to give up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must be judged by a clear factual check, and the Supreme Court has pointed out this point and remanded. When the heir becomes a beneficiary, the heir's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naturally arises from the effect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is not the inherited property, but the inheritor's own property. In that respect,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renounce inherit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waiver of claim rights. And whether or not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claims has been abandoned must be made by a clear intention. This should be revealed through confirmation of fact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Supreme Court ordered this to be revealed. Disputes must be resolved reasonably by properly applying the laws of other people's death insurance, group insurance, and beneficiary designation and change. When the insured person dies and the heir is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it is a future task to make the legal rule about more thoroughly categorization in order to resolve the legal dispute over the determination of the claimant in third party insurance.

Key Words : death benefit, beneficiary, insurance for others, collective insurance, insurance on death of other person, consent of the insure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bandonment of receipt of insurance money